



[1999.8.9] [204 , 1999.8.9,]

() 044 - 201 - 3915

1 () 54 6
가 , 가 ,

2 ()
1. " " 가 가 ,
2. " " 가 가
3. " " 가 , , ,
4. " " , ,

3 () (" ") 13 1 (22 2
" ")
(" ") ()
1 가 4 1 2

4 (가) 54 6 2
<% : 0%> 가 (" ")
1 가
1.
2. (" ")
3. 가 가
2 1
1. (, ,)
2.
3.
4.
5. ()
2 2 1<% : 1%> 2 <% :
2%>

5 (가) 가 3 가

6 (가) 1 가

1. 280 (2 140)
가 3 <% : 3%>

2. 가 5 , 8 (2 6 , 8
) . , 가 가

3. 4 <% : 4%> (가
)

4. , 가 500

5.

6. ,
가

7 ()

가

8 ()

1. 5 <% : 5%>

2. 3.25

3.

4. 15

5.

9 ()

1.

2.

3.

800 ,

20

4. 가 30 가 60 U

10 ()

1.

2. , 가 ,

3. 0.3 , 가

4. 1

30 U

5. 가

6. 2 <% : 2%>
가

7. 가
. , 2 <% :
2%>

- 11 ()
1. 1 . , 가
.
2. 가
, 가
3. 0.25
4. 가

- 12 ()
1. 가
2. 가

13 () 가
.

14 ()
.

< 204 ,1999.8.9>
() 1999 8 9 .
() 가 가

[별표 1] 연결로등의설계도면작성요령[제4조제4항관련]

도 면 명	작 성 요 령
위 치 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표시
평 면 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경계선, 점도구역선,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기타 시설물의 위치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면도	종방향 1/1,200이상, 횡방향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축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축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축점마다 1/100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점도구역의 경계선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 대 공 사 도	연결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연결로등의설치방법[제4조제4항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그림 생략]
 - 나. 2개소이상 연결의 경우
[그림 생략]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그림 생략]
 - 나. 2개소이상 연결의 경우
[그림 생략]

*비고 : 위 표중 R은 곡선반경,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로 한다.

[별표 3] 곡선구간의곡선반경및장애물까지의최소거리[제6조제1호관련]

(단위:미터)

구 분	4 차 로 이 상				2 차 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교차로주변의연결로등의설치제한거리[제6조제3호관련]

(단위: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변속차로, 회전차로등의 도류화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도류화시설의 설치예정구역)으로부터 연결로등 접속시설의 설치제한거리	60	45

비 고

1. 도류화되지 아니한 교차로에 대하여는 당해관리청이 수립하는 도류화계획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을 산출하여 당해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그림 생략]

[별표 5] 변속차로의최소길이[제8조제1호관련]

(단위:미터)

시 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주유소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30대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 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등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 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50대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진입로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100가구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주 : 1) 설계속도 80km/h, 4차선 이상 기준임. 다만, ()는 60km/h 기준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함.

[서식]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

[별지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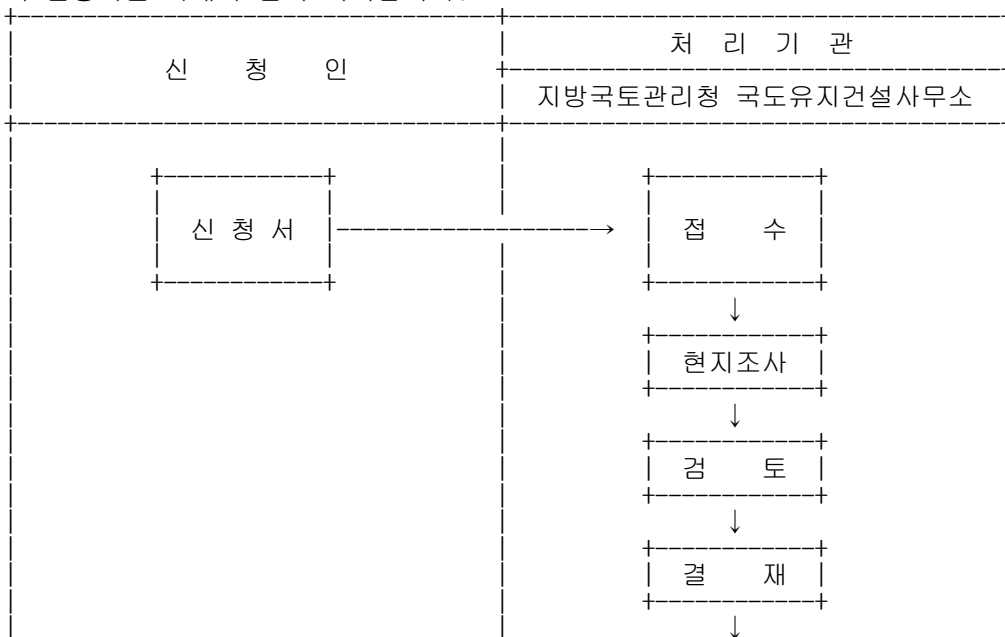
(앞 쪽)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⑤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		
⑥도로의 연결지점		
⑦사용목적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및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비서류		수수료
1. 연결계획서 1부		없음
2. 연결로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30300-33011 민
'99. 7. 21 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뒷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서식]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

교 부	←	허 가 서
-----	---	-------